

# 이 나라 건축문화에 검은리봉이 메어질 것인가

— ‘건축문화’는 ‘경제거래’로 다스릴 수 없다. —

김 기 수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당국은 본 협회 윤리규약 제9조 ‘건축사는 건축사 업무에 관한 여하한 형태의 입찰에도 참가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 거래로서 집단 배척에 해당된다고 지난 86년 7월 30일에 판정을 하고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당국은 건축설계의 빌주는 예산회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공개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의 3개 방식 중 빌주자가 자의로 선택하는 것이며, 수주자인 건축사가 그 방식 중 일부를 집단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바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것이 그 주요 논거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정거래 위원회 당국의 판정에 이르기까지에는 수다한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조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건의문 제출 및 관계기관에의 의견조회 등 충분하고도 합당한 주장과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시정명령 조치를 결정 통고한 처사는 건축문화 활동에 대한 물이해와 행정의 아집과 오만의 소산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8월호 건축사지에도 상세하게 논술한 바 있으나 공정거래 위원회의 시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논단에서는 현행법 체제와 행정 운용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의견과 주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건축설계는 조형예술 창작업무이며, 설계자의 아이디어, 식견, 기술, 경험, 예술성 및 창작성을 그 전제로 하는 전문직업성이 높은 지적업무로서 설계자를 가격경쟁 입찰 방식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동일 유형의 지적업무로 분류되는

변호사의 변호 행위나 의사의 진료·행위를 가격 입찰 방식으로 결정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으며, 그런 예는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건축설계는 규격화된 제품이나 상품이 아닌 조형 창작작품이며 원가 계산의 산출 근거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가격 입찰은 현행제도 절차상 그 집행이 불합리함은 명백한 논리입니다.

둘째로, 현행 저작권법과의 관계입니다. 동법에서 ‘건축’을 회화, 조각, 공예, 악곡 등과 같이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는 바로 ‘건축’ 설계업무가 저작업무임을 명시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문화예술적인 저작 또는 창작 업무를 일반 상품이나 제품의 생산, 판매 행위와 같이 취급하여 가격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여 빌주한다는 것은 어떠한 법리나 논리로서도 합리화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과의 관련입니다. 동법 제1조 (목적)에서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저작 또는 창작업무는 상업적 영리사업이나 기업활동이 아닌 그 업무의 성질상 경제거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경제 법률인 공정거래 관계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물론 건축사의 창작 업무가 결코 시장 지배적 지위를 점하거나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가져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회계 법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법시행령 112조에서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동조 제1항 제1호에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하여 특정인의 기술, 용역…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재무부 장관이 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한 재무부령인 계약 사무처리 규칙 제39조 제3호에서 「학술, 연구, 설계, 조사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로 세부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업무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학문적이고 예술적인 저작 또는 창작업무인 점을 감안한다면 동 규정에서 말하는 「계약의 성질에 의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당연한 논리의 귀결인 것입니다.

건축은 그 나라 문화의 척도라고 합니다. ‘건축문화’는 어떠한 형태로든 ‘경제거래’로 다스릴 수도 없는 것이며, 창작성을 값으로 쟁 수 없는 것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인 건축설계 업무를 가격 경쟁입찰에 부쳐서 보다 싼 값으로 빌주하는 것이 건축주 즉,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행정착각의 우(愚)를 범하여 이 나라 건축문화에 검은 리봉을 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될 것입니다.

1600년대 음악가의 아들로 태어난 이태리의 물리학자이며 천문학자인 갈리레이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찬성 주장하다가 교황청으로부터 그 주장의 금지령을 받았으며, 마침내는 종교재판에 회부되어 모진 시달림 끝에 지동설을 버릴 것을 서약하였으나 선서를 끝내고 나와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고 중얼거렸다는 유명한 고사를 상기하면서, 그리고 당시 절대적 지배력을 가졌던 종교의 힘으로도 천리를 어길 수 없었다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